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749]

사건명 : 승무 중 직무외 질병 결정 처분 취소

원고 : 원고1

전남 신안군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A

피고 : 수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론종결 : 2018. 8. 30.

판결선고 : 2018. 10. 4.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승무 중 직무 외 질병결정처분을 취소 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경부터 근해○○어선으로 새우젓을 어획하는 ○○호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호는 2016. 7. 3. 05:28경 전남 ○○군 ○○면에 있는 ○○○항에서 출항하여 해상에서 새우젓 어획작업을 하였고, 2016. 7. 5. 05:00경 당일 조업을 시작하여 선원들이 5시간 정도 미리 해상에 투입해 두었던 어구에서 그물을 옮겨 새우젓을 어획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동안 원고는 선장으로서 조타실에서 배를 운항하였다. 원고와 선원들은 위 작업을 마치고 식사를 한 후 15:00경까지 각자 선실 등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2016. 7. 5. 15:00경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호가 운항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5:30경 원고의 발음이 어눌하고 온 몸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와서 ○○호의 운항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주변에서 어획작업을 하던 다른 선장들이 다른 배를 이용하여 원고를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의2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2016. 8. 29. '이 사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기존 개인력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승무 중 직무 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함이 타당하나, '동 건은 최초 발병일인 2012. 1. 2.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건'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8.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병력상 이 사건 질병과 관련된 위험 인자

를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원고가 ○○○○○ 산하 ○○○○보상보험 ○○위원회에 어선원재해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3.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 9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2006. 3.경부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2016. 7. 5.까지 10년 동안 ○○호의 선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약 20여 년간 선원생활을 하여 이 사건 질병 발생 당시까지 약 30여 년 정도 선원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원으로서는 물론 선장으로서의 업무나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여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주된 업무는 미리 투하된 어구와 어구 사이를 선박으로 이동시 조타실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역할이고, 투하된 어구에서 새우젓을 어획하거나 어획한 새우젓을 선별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선원들이 수행하였다. 원고는 선원들이 위와 같이 어획작업이나 선별작업을 하는 동안 선박을 운항하거나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가 그 특성상 격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어획량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원고가 선장으로서 연봉제를 적용받아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며, 단지 일정한 어획량을 초과 달성할 경우 그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받는 형태였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설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3) ○○호는 그 조업의 특성상 일정한 조업기(통상 2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까지, 단 8월은 금어기 또는 휴어기이다)가 존재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면 한 번 출항시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달 이상 해상에서 대기와 운항을 반복하면서 계속 조업을 한다. 그리고 1일 조업은 날씨가 좋

은 경우(중간에 대기 시간이 없는 경우) 통상 10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오전 작업 5시간을 하고, 식사를 한 후 휴식을 취하며, 오후 작업 5시간 정도를 한 후 잠을 자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 이와 달리 조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날씨인 경우 날씨가 조업에 적합해질 때까지 해상에서 계속하여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를 한다.

이와 같은 ○○호의 조업의 특성과 앞서 본 원고가 30여 년이나 선원 생활을 하여왔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장기간 해상에서 머물러 있다는 사정이나 위와 같은 조업의 형태만으로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처분은 어선원재해보험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고,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이를 준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다르게 직무상 질병(어선원재해보험법 제22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항으로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린 경우(위 법 제23조)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어선원재해보험법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가 아닌 경우) 경우까지 일정한 범위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어선원의 특성상 원고의 경우처럼 일반적인 근로자(1주일에 5일 근무하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1주일 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와는 다르게 특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업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되, 위와 같은 어선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더구나 업무상 재해 판정에 있어서 일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당해 어업의 종류에서 이루어진 일반적인 조업의 형태와 큰 차이가 없다면 조업형태 자체만을 두고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호의 조업 형태가 유사한 종류의 어업을 영위하는 다른 선박들과 특별히 다른 형태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4) 이 사건 질병 발생 즈음 ○○호의 조업 상황을 보면, 2016. 3.경부터 5.

중순경까지 10일 내외로 입·출항을 하면서 조업을 하였고, 2016. 5. 16.부터 2016. 6. 15.까지 약 1달간 해상에서 조업을 한 후 이 사건 질병 발병 당시까지 짧게는 2일 길게는 9일 정도 입·출항을 하면서 조업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질병 발생일 당시는 2016. 7. 3. 05:28경 출항하여 이 사건 질병 발생 당시인 2016. 7. 5.까지 앞서 본 통상적인 조업형태(1일 10시간 조업)에 따라 조업을 하고 있었다. 특히 원고는 이 시간 질병 발생 당시 오전 작업 종료 이후 약 5시간 정도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작업이 시작되어 약 30분 정도 운항하던 중이었고, 원고가 2016년도 조업기간 중 평소와 다르게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처럼 ○○호의 조업형태나 원고의 업무형태가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평소와 달라서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흡연 등이고, 기존 질환 과거력 역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의료자문결과나 의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1. 5. 9. 양성고혈압 판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질병 발생 당시까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2012. 1. 2.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2014. 3. 31.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치료 및 수술을 받았고, 2016. 1. 4. 심부전증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또한 원고는 1일 2~3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6)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자문결과 6인의 의사를 모두 위와 같은 원고의 기초질환 및 생활 습관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2, 판사3